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나517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남다영

변 론 종 결 2021. 5. 7.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소237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에어컨 구매 결제 및 출고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통화 연결이 된 금융감독원 소속 C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한 범인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관리하다가 돌려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국민은행 계좌에 넣어 두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건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속은 원고는 그의 지시대로 위 금융정보를 알려주었다.

나. 위와 같이 획득된 정보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20. 2. 27. 3회에 걸쳐 ‘D’를 입금자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의 친구 E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F’라는 사람과 환전 거래하기로 하고, 2020. 2. 27. F가 말한 대로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되자, F의 지시에 따라 시암상업은행(SCB) 계좌로 태국 돈 합계 779,220.78바트를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입금된 30,0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비정상적인 환전거래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E에게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결과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위 돈은 환전약정에 기하여 송금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불법행위 방조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원고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000만 원이 2020. 2. 27.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직후 E이 위 원화에 상응하는 779,220.78바트를 E 명의의 K뱅크 계좌에서 F가 지시하는 시암상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② 피고가, E의 부탁에 따라 환전거래 목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E로부터 예금계좌 사용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E과 F의 거래에 따라 F 측에 의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화가 입금되자 E이 그의 돈으로 입금된 돈에 상응하는 태국 돈 바트로 환전하여 F로부터 요청받은 계좌로 다시 보내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령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E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는 친구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피고가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이 있을 뿐이다(을2).

② 피고는 E와 F 사이의 거래관계를 비롯하여 그 이전의 환전거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피고가 환전거래를 위해 받은 돈을 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E로부터 예금계좌 사용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판사 허준서

1) 원고의 위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기는 하나,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